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8월 18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18일

3. 제안이유

- IMF 경제난국의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도 자체 조직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실·국·본부 및 소속행정기관의 통·폐합운영 계획에 따라 기능을 재배치함은 물론 시대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를 수용, 소속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 규제·통제부서 기구조정
 - 국단위 조직인 「감사실」을 과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
 -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

- 유사 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 「복지환경국」으로 개편
- 자치시대에 알맞도록 실·국·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
 - 내무국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국 → 문화진흥국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사업소 → 산림환경연구소
 - 농축산사업소 → 축산위생연구소
- 「공업경제국」에 국제협력기능을 보강, 「경제통상국」으로 명칭변경
- 기능유사 기구의 통폐합
 - 자연학습원 → 산림환경연구소로 흡수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당면한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행정기구 및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안에 있어서 제1장 총칙, 제2장 의회사무기구, 제3장 부지사 제4장 분청, 제5장 직속기관, 제6장 사업소와 부칙을 두어 도분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현행 11실국본부 10직속기관 7사업소에서 8실국본부 10직속기관 6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규제 통제부서인 감사실은 과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폐지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유사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하여 복지환경국으로 하였고 기능유사 기구인 자연학습원은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 흡수하여 총 1실 2국 1사업소를 감축하였으며
- 또한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명칭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내무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공업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진흥국으로,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산림환경사업소는 산림환경연구소로, 농축산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개별 조례로 설치되었던 의회사무처·분청·직속기관·사업소의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 재정하게 됨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2개 조례를 폐지하였고,
또한 본 조례제정으로 실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북도청 조직위원회 조례의 23개의 조례조문중 변경된 실국장등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한시 기구로 설치된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는 존속기한을 99년 12월말로 하는등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참 부

- 충청북도행정조직에 관한조례(안)